

2026

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법령

엠북 농수산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PDF 전자책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- ★ 5시간 완성

도서명 :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법령

ISBN : 979-11-7393-127-7

발간일 : 2025-12-04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0,000원



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

[목차]

제1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(p3)

제2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(p68)

제3편 원산지표시법(p129)

제4편 친환경농어업법(p142)

제5편 수산물유통법(p184~216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, 품질관리

제3장 지리적표시

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

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

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/가공시설의 등록/관리

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

제8장 보칙

제9장 벌칙

[약어]

-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
- 해수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- 장관들은 농림부장관, 해수부장관
-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
- 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- 인증기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
- 농수산물등은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
- 수산물등은 수산물, 수산가공품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- 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- 중점기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
- 우수관리는 농산물우수관리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, 상품성 향상, 공정하고 투명한

거래 유도

-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

2. 정의

- 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 따름

가. 농수산물

- 농산물은 농업활동, 수산물은 어업활동과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(소금은 제외)

나. 생산자단체

- 1)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 조직
- 2) 수산업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 조직
- 3)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
- 4)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

다. 물류표준화

- 농수산물 운송/보관/하역/포장 등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, 용기, 설비, 정보 등을 규격화해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함

라. 우수관리

-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 생산, 수확 후 관리/유통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,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, 중금속, 잔류성 유기오염물질,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

(비고)

- 축산물은 제외
- 관리는 저장, 세척, 건조, 선별, 박피, 절단, 조제, 포장 포함

마. 이력추적관리(이하 추적관리)

- 농수산물(축산물은 제외)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농수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 기록/관리

바. 지리적표시

: 농수산물등의 명성/품질,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농수산물등에 다음 표시

- 1) 농수산물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표시
- 2) 농수산가공품
- 어업허가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특정 지역에서 제조/가공된 사실,
- 이외 농수산가공품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/가공된 사실 표시

사.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

- 동일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

아. 지리적표시권

-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(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포함)을 배타적 사용할 지식재산권

자. 유전자변형농수산물

-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

차. 유해물질

- 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, 잔류성 유기오염물질, 병원성 미생물, 곰팡이 독소(생물 독소), 방사성물질(방사능), 유독성 물질, **처장 고시 물질**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 끼칠 물질

카. 농수산가공품

- 1) 농산가공품은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해 가공한 제품
- 2)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을 다음 원료나 재료의 사용비율,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
 - a) 수산물을 원료(재료)의 50%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
 - b) 상기 제품을 원료(재료)의 50% 넘게 사용해 2차 이상 가공한 제품
 - c) 수산물과 그 가공품, 농산물(임산물, 축산물 포함)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(재료)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함량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

3.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(이하 심의회)

가. 설치

- 장관들 소속으로 둔다
- 법에 따른 농수산물, 수산가공품 품질관리 등 심의

나. 구성

- 1) 위원장/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 60명내
- 2)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 -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
- 3) 위원

a) 교육부, **산업통상부**, 보건복지부, **기후에너지환경부**, 식품의약품안전처, **지식재산처**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 자나 해수부 공무원 중 해수부장관이 지명한 자

b) **다음 단체/기관**(이하 **농협중앙회**등) 장이 소속 임직원 중 지명한 자

- 농협중앙회
- 산림조합중앙회
- 수협중앙회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한국식품산업협회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한국식품연구원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한국소비자원

c) 다음 중 장관들이 위촉한 자

-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) 추천 자
- 농수산물 생산/가공/유통, 소비 전문 지식, 경험 풍부한 자
- 임기 3년

다. 운영

- 1) 심의회에 농수산물등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 둔다
- 2)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 분야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 **안전성 분과위**, **기획/제도 분과위** 둘 수 있다
- 3) 분과위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봄
- 4)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 국제 동향을 조사/연구하게 하기 위해 심의회에 연구위원 둘 수 있다

라. 직무(심의 사항)

- 표준규격, 물류표준화
- 우수관리, 수산물품질인증, 추적관리
- 지리적표시
-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
- 농수산물(축산물 제외) 안전성조사, 그 결과에 대한 조치
- 농수산물(축산물 제외), 수산가공품 검사
- 농수산물 안전, 품질관리 정보 공개 범위, 주기, 시기, 방법
-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 있는 중요 정보
- 수산물 생산/가공시설, 해역 위생관리기준
- 수산물등의 중점기준
- 지정해역 지정
-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
- 농수산물,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에 관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4. 변경신고의 수리

- 인증기관, 우수관리시설, 수산물 품질인증기관, 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 10일내,
검정기관 변경신고 20일내 수리 여부 통지
- 기간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미통지시 기간(처리기간 연장/재연장시
해당 처리기간) 끝난 날 다음 날 수리 의제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

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

1. 표준규격(포장규격과 등급규격)

- 농수산물은 축산물 제외

가) 장관들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, 유통 능력 향상, 공정 거래 실현을 위해 표준규격 정할 수 있다

나)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(이하 표준규격품) 출하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 가능

2. 권장품질표시

- 농산물(축산물 제외)

가) 장관은 포장재나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, 공정 거래 실현을 위해 표준규격품 표시 안한 농산물 포장 겉면에 등급/당도 등 품질 표시 기준 따로 정할 수 있다

나) 농산물 유통/판매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 안한 때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 가능

제2절 농산물우수관리

- 농산물은 축산물 제외

1. 우수관리의 인증(이하 우수인증)

가) 장관은 우수관리 기준(이하 우수기준) 고시 요

나) 우수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/관리하는 자나 우수기준에 따라 생산/관리된